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1
----------	-----

2021. 3. 2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 나.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3월 12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도지사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육성계획수립,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둠(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최근 농가 및 경지변화 비교

구 분	전 국			총 북		
	2010년	2019년	증감	2010년	2019년	증감
농가호수(호)	1,177,318	1,007,158	△14.5%	79,963	70,735	△11.5%
농가인구(명)	3,062,956	2,244,783	△26.7%	211,522	162,083	△23.4%
농경지면적(ha)	1,715,301	1,580,957	△7.8%	116,973	101,900	△12.9%

※ 자료출처 : 통계청

☑ 스마트 농업의 효과

-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생산량 32.1% ↑, 노동시간 13.8% ↓, 병해충 6.2% ↓
- 농업인의 59.5%는 향후 스마트팜 도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자료출처 : '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주요 검토내용

1)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²⁾로 농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시도(9개) :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농업과 농촌 및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스마트농업”, “스마트팜”등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매년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두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함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3호에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정부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분야”에 스마트 농업*의 대표적 형태인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에서는 제천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R&D 투자 확대

- 본 조례는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경지 감소,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및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때
-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어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에 포함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2. 비용 발생요인

-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농어업 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운영
 - ※ 단, 상기 위원회는 조례안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므로 실제 비용발생은 없음

3. 관련조문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 제9조(위원회)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조례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결과 : 1,282억원 (자부담 포함) ※ 비용추계표 참조
- 재원조달방안 : 국비(기금 포함), 국비 용자, 도비, 시군비, 수혜자부담
 - 기존 및 신규(공모 등) 국비사업 유치로 국비(기금, 용자 포함) 조달
 - 도비 및 시군비는 국비 매칭(자체사업은 필요 시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44,249	33,333	15,771	15,931	18,891	128,175	
농산분야 보조사업	35,444	24,313	4,351	4,711	5,071	73,890	
축산분야 보조사업	8,805	8,820	8,820	8,820	8,820	44,085	
수산분야 보조사업	-	200	2,600	2,400	5,000	10,200	
재원조달	44,249	33,333	15,771	15,931	18,891	128,175	
의존 재원	소 계	27,408	17,932	7,730	7,737	9,124	69,931
	보조금	21,915	12,396	2,147	2,107	3,447	42,012
	기 금	3,093	3,136	3,183	3,230	3,277	15,919
	융자금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자체 수입	소 계	5,326	4,750	1,981	1,965	1,280	15,303
	보조금	5,326	4,750	1,981	1,965	1,280	15,303
시·군비	8,308	7,309	2,553	2,577	3,670	24,417	
기 타 (자부담 등)	3,207	3,342	3,507	3,652	4,817	18,525	